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저축은행중앙회

보도	2023. 6. 2.(금) 조간	배포	2023. 6. 1.(목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길성	(02-3145-6771)
	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영업감독팀	담당자	팀 장	유상범	(02-3145-6775)
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김생빈	(02-397-8603)
	기획관리본부 기획조정부	담당자	부 장	김병수	(02-397-8610)

저축은행 업권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

- 주요 내용 -

- ◆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 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'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'을 6월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고
 -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,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.
- ◆ 저축은행 업권은 이러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 연체 사전 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,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◆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.

I. 추진 배경

- 저축은행 업권은 한계상황에 놓인 취약·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
 -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지원실적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*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*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'20년 1,806억원에서 '22년 2,51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'20년 11.6%에서 '22년 9.3%로 감소

- 아울러 고객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채무 상환부담 이외에도, 다중 채무 및 생계자금 부족 등 다양한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
 - 고객들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정보 제공 등의 안내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
 -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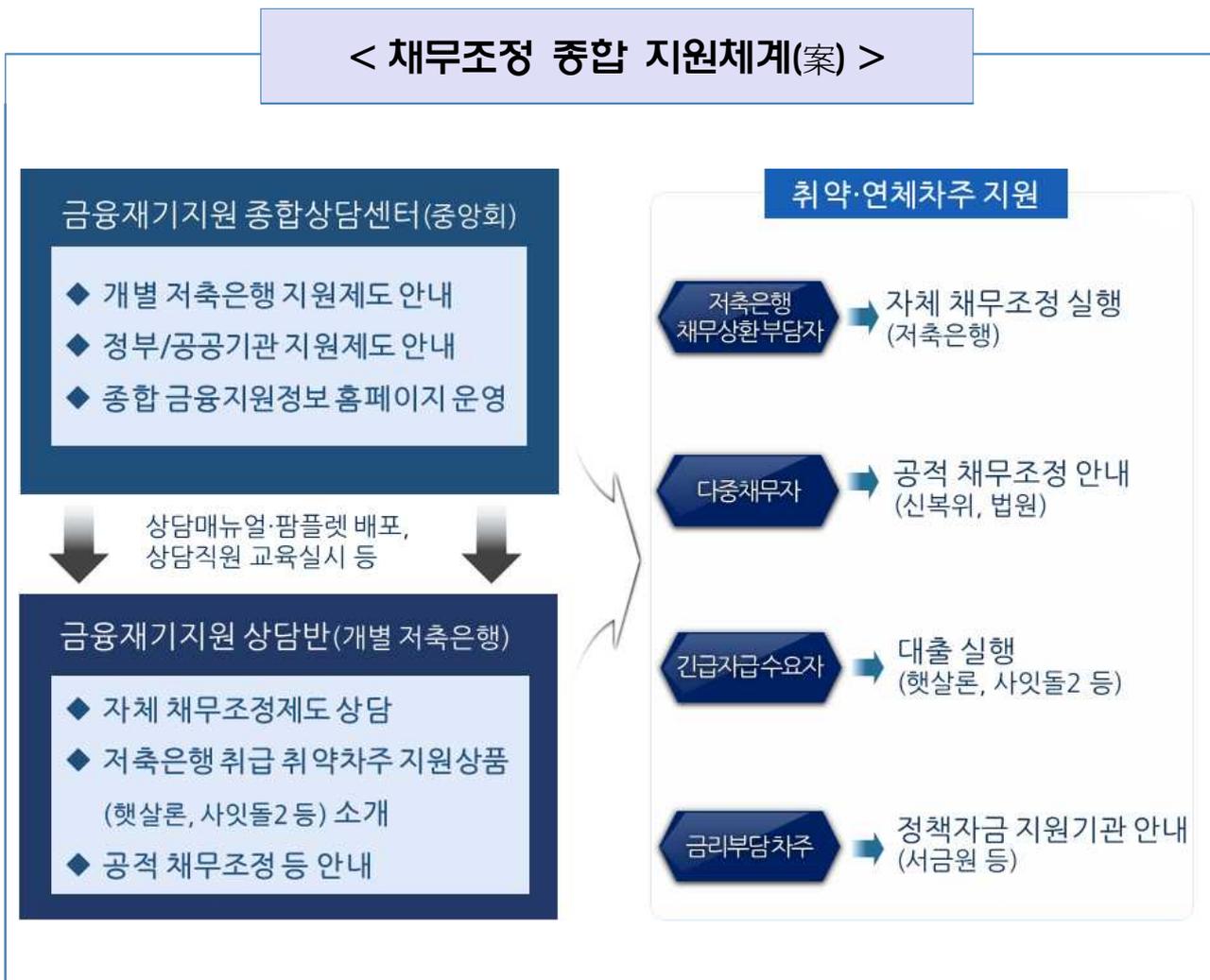
II. 주요 내용

1 **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** 구축

*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(중앙회) 및 금융재기지원 상담반(각 저축은행)

-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6월중 구축할 계획입니다.
 - **(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설치)**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‘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’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,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
 - 동 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·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,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,
 -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·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입니다.

- **(금융재기지원 상담반 운영)**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‘금융재기 지원 상담반’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,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.
 -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,
 -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,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등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



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금융재기 지원 사례

[사례 1] 선제적 만기연장을 통해 임대아파트 처분을 방지

- ◆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□□저축은행의 임대론(9백만원)을 이용하던 차주 A씨(60대, 女)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타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
 - 이를 인지한 □□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와 상담을 통해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 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하였으며,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
- ◆ 이후 □□저축은행은 1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
 - A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형편에 맞게 일부씩 원금을 상환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고, 채무변제를 도와준 □□저축은행에 깊은 감사를 표시

[사례 2] 이자감면 등을 통해 금융재기를 지원

- ◆ ●●저축은행의 신용대출(1천만원)을 이용하던 B씨(30대, 男)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모친이 암 판정을 받으면서 생활고가 급속도로 가중되어 연체가 발생
 - B씨는 ●●저축은행에 변제의사를 밝히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, 모친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채무를 일부변제하는 등 상환의지를 피력
- ◆ 그러나 모친이 병환으로 사망한 후 한계를 느낀 B씨는 저축은행에 지원을 요청
 - ●●저축은행은 B씨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감안, 발생했던 이자의 약 90%를 감면하여 자체 워크아웃을 승인
- ◆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B씨는 이자감면 된 ●●저축은행 대출 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의 대출도 모두 상환하여 금융재기의 발판을 마련

2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유인 강화

- **저축은행중앙회**는 저축은행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.
- ① **(면책제도 도입)** 고의·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
 - ② **(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)**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·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.
 - ③ **(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)**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2천만원으로 상향(기존 1천만원)토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.

- **금융감독원**도 저축은행의 취약·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,
 -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.

Ⅲ. 향후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업권에 설치되는 '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'이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
 -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
 -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**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제도 개요**

- 목 적 : 저축은행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
- 지원대상* : 개인 및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 차주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금융기관 공동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대상 채무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
- 지원구분 : 연체기간에 따라 사전지원(연체전), 프리워크아웃(3개월 미만), 워크아웃(3개월 이상)으로 분류
- 지원방식
 - 만기연장, 원리금 상환유예, 금리인하, 장기전환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상환방법 변경 등
 - 고객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원금·(연체)이자 감면, 담보권 실행유예,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등 지원범위 확대

<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>

구 분	연체 前		연체 後	
	① 취약차주 사전지원	② 프리워크아웃	③ 워크아웃	
지원 대상	-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- 연체발생 우려자	-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	-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	
지원 방식	공통	- 만기연장 - 원리금 상환유예	- 금리인하 - 장기전환	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- 상환방법 변경
	제도별	- 이자 감면	-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- 담보권 실행유예*	- 원금, 이자, 연체이자 감면 - 성실히행시 채무잔액 감면 -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* -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

※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제외